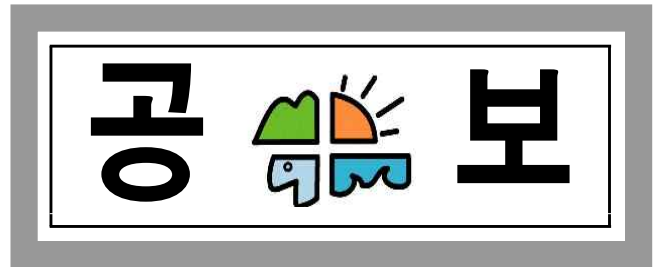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86호 2012년 3월 20일(화)

공 고

○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란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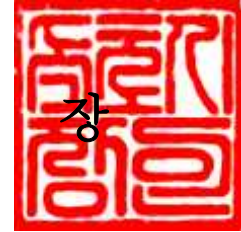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공고 제2012 -192호

속초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FTA 발효(2012.03.15)로 인한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1108호, 2011.12.02)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세 세율 조정(인하)

- 배기량 800cc~1,000cc이하 : 시시당 세액 100원 → 80원
- 배기량 2,000cc초과 : 시시당 세액 220원 → 200원(각20원 인하)

3.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27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3월 20일 ~ 2012년 4월 8일(20일간)

6. 의견제출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세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세무과 (속초시 중앙로 183)
- 전화 033)639-2156, 팩스 033)631-0778, 이메일 josuham@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공고란의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찬 · 반 여 부	찬 · 반 여부에 따른 의견
속초시 시세 조례 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 -----. 1.----- ----- -----.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 생 략 “		800시시 이하	80원	“현행 과 같음“		1,0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000시시 초과	22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